

제405회 정례회  
'22. 11. 23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사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(O3)을 포함하고,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,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
  - (현행)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」
  - (개정) 「충청북도 대기오염 경보 및 예보에 관한 조례」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 - 미세먼지(미세먼지, 초미세먼지), 오존, 예보 및 경보 등
- 도지사, 시장·군수 및 도민의 책무(안 제3조)
-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경보 대상지역, 내용 및 기준,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-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(안 제9조)
-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(안 제10조)
- 시·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# 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조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(O<sub>3</sub>)까지 포함하고 있음.
- 이에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을 포함하고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의 제명 변경
  - 본 조례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‘미세먼지’로 한정된 제명을 ‘대기오염’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함.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  - 현행 조례에서 미세먼지에 한정하였던 용어 정의를 개정 제명 및 조문에 맞추어 대기오염, 미세먼지, 오존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 필요함.

○ 안 제3조는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- 도지사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민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대기오염은 도지사의 노력만으로는 저감되기 어렵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므로 도지사와 도민 모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.

○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, 예보에 따른 조치,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은 환경부의 ‘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매뉴얼’ 과 ‘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’ 에 준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었음.
- 또한,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규정과 도내 전 지역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극적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.

○ 안 제7조는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안 제8조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별표 2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정부의 ‘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매뉴얼’ 과 ‘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’ 에 준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었음.

-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, 정보 제공시스템의 운영, 시·도간 협력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차량운행 자제, 사업장 또는 공사장 운영자의 노력을 규정하고, 도지사는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·도와의 협력, 대기측정망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」를 「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」로 전부개정함으로써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을 포함하고 효율적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결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본 조례개정안 시행을 통해 도내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